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4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2)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3)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5)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18.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2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2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2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2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26.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7)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4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3)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0)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6)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5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5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55.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5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5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58.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59.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6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6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6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6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6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6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6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0)
75.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7)
7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1)
7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1)

상정된 안건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7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2) 7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3) 7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7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5) 7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7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7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7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7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7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7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7
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7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7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7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7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7
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7
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1) 7
18.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4
1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4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4
2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14
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14
2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14
2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14
2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14
26.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14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14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14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14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14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14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14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14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1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15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15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15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7)	15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15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15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15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15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15
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15
4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3)	15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15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15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0)	15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15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15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6)	15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15
5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15
5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15
55.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15
5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15
5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15
58.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15
59.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15
6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15
6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16
6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16
6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16
6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16
6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	16
6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	16
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	16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	16
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	16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16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16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16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16
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0)	16
75.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7)	16
7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16
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1)	16
7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16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간 상정하기로 합의된 법률안 및 청원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2)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3)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5)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1)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7)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8)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0)
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9)
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5)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7)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1)
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1)

(10시06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등 총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6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절인 현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관련해서는 노동절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근로자의 날로 하고 있는 것, 그다음 노동자의 날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무 조례를 통해 노동절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휴일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해당 공휴일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최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점을 반영해서 ‘노동절’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춘생 위원 제가 이 법안 발의를 하면서 노동절뿐만이 아니라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 내용은 검토의견 자체가 빠져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막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소위원장 윤건영 아닙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노동절 부분이 좀 시급해서 그 부분을 먼저 다룬 거고요. 제안 주신 어버이날은 추후에 다룰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여기서 대체공휴일이 되는지 한 가지와 올해 5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업무에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대체공휴일 여부는 일단 이 법이 먼저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대체공휴일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5월 1일이 휴무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 민간부문은 이미 휴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현재는 공휴일 16일 중에 1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1월 1일하고 현충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 시행령 결정은 누가 하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 정부 측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달희 위원 공직자니까 공무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적극 찬성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대체공휴일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이견이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안 개정을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6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를 봐 주시면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하는 의견을 밝혀 왔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아휴직 확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현행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육아휴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간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같은데요. 자녀당 1년 또는 1년 6개월로 하고 있고, 요건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휴직 종료 시까지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민간은 반대로 휴직 개시 시에 이 요건에 해당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은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습니다.

반면에 한정애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괄호 부분을 보시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고등학교 1학년까지 또는 18세 이하,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엄태영 의원님 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5쪽에 최기상 의원님 안은 휴직 신청일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과 같이 휴직 신청일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갖춰지면,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당 3년으로 하는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가정친화적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동안 공공부문이 출산·육아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민간의 변화를 견인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면 공무원이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먼저 선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의 구체적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대상 범위를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서 아이를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나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한정애 의원안과 엄태영 의원안의 단서 조항에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16세·고1 또는 18세·고3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양육·부양이 육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이 부분은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근로자와의 격차가 현재보다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최기상 의원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경우 이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김선교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과 같이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휴직기간을 현행과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포함되어 인정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원휴직의 유형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과 같이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육아휴직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난임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청원휴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가정의 양립 지원 및 출산 장려 정책, 이를 반영한 입법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교육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에서는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난임휴직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심리적·실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법적 신분보장과 고충·소청 등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의 실익이 낮다거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 및 임용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용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 당면 과제로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비록 난임휴직에 있어 이와 같은 제도들의 현실적 타당성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공무원의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들은 이미 육아휴직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둘째, 법률의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2012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불임이라는 표현을 난임으로 개정된 바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임·난임’을 ‘난임’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휴직 인정을 위한 난임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법에서와 같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위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난임휴직을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할 경우 이에 대한 휴직기간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부칙입니다.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3개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대상의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실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포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난임휴직 신설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로 둘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례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행안부차관도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월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되도록 법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안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난임휴직 신설 그리고 부칙 모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5쪽에 육아휴직 기간을, 한정에 의원안을 보면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16세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임태영 의원은 18세까지고. 그런데 이 기간을 확대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유급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계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주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말씀도 되게 좋은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민간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단계적으로……

○정춘생 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인사처라든지 협의를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 의견입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이게 자녀를 돌보는, 특히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이 왔다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춘생 위원 예.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요에 의한 육아휴직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상이 그냥 질병이 없거나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일정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부모가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의 소원은 저 아이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너무 감수성이 부족한 검토의견이고 부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가 다른 대체 수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춘생 위원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육아휴직도 1년만 유급입니다. 1년의 경우 유급이고 그다음 나머지 기간은…… 물론 특정한 경우에 6개월 정도 연장되기도 하지만 그 유급·무급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휴직제도의 본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맞게 일부 휴직제도가 만들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춘생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 정춘생 위원님 지적사항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수정안대로 의결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걸 묶어 두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오늘 전문위원 수정의견 낸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다른 이견이 없으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박수민 위원 짧게 멘트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육아휴직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입법으로 숙선수범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정부하고 공공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적극 지지의 의견을 표하고요. 오늘 심사에 임하게 해 주서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수민 위원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2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2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2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2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26.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4)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7)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7)
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4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3)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0)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5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6)
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5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5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55.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5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1)
5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58.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59.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5)
6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6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6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6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6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6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6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4)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60)
7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57)
7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84)
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11)
7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09)

(10시25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8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6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 심사자료 1쪽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의 심사경과를 보시면, 오늘 심사대상이 총 9건입니다. 그중에서 6번 사항까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후에 정부 소관부처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로 회송된 법안이고, 그 이후 7·8·9번이 저희 위원회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법안을 내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7·8·9번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5쪽의 공청회 진술 요지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먼저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 8개 개별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소셜벤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여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거버넌스 및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국가 공동체의 포용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한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나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합 돌봄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내 유희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들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주요 경영정보 공시의무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거나 공시의무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의무를 가중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부담을 추가할 수 있고, 제정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원의 설치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수정 필요 사항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는 중앙부처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격을 고려해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규정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정부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의견에 제시해 났습니다.

8쪽의 참고, 사회연대경제 5대 부문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음 9쪽의 제정안과 현행 개별적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영역별 관리체계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0쪽에 위성곤 의원안, 김성희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이 있는데요. 이게 개별 구체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큰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제 조문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목적 부분입니다.

제정안들에서 목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 사회통합, 시민공동체의 성장, 균형성장, 국민경제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법안을 통해서 목적 규정을 달성하려는 것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면서도 간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기초하에 수정의견 부분 보시면 공통의 법적 토대를 통해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통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통합,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런 표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다음 17쪽, 정의 규정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금융 등을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연합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규율 방식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 조항 적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서 위성곤·김성희 의원님 안은 사회연대경제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연대경제보다 나중에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 정의 시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언급은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제정안들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정의하면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제정안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 제안해 왔고요.

다음 18쪽, 사회적 가치 부분인데요.

이거는 김영배 의원님 안에만 있는 안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 입법례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 사회적 가치의 종류를 나열해서 정의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오히려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안에서는 삭제 조치를 하였고요.

나머지 정의 규정 체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김성희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반면 김영배 의원님 안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적인 개별 조문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나 시설비 등 지원 조항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한해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김영배 의원님 안처럼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정의 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정의를 할 경우 위성곤 의원님, 김성희 의원님 안은 기존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가 되겠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해서 그 범위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지금 18쪽 가운데 거의 말미 부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내용들도 있고 빼야 될 내용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사항입니다.

농어업법인·단체 등의 사회연대경제기업 포함 여부 건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농어업법인·단체 등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고 있는데, 마을기업법 제정 전 농촌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사회연대경제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현재 농어업법인·단체 중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그라미 2번, 농촌서비스 공동체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할지와 관련해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서비스 공동체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고 있는데,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자원봉사의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정안에는 조정돼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0쪽, 동그라미 3번 사항입니다.

농협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출자회사의 사회연대경제기업 포함 여부 건인데요.

위성곤·김성희 의원님 안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출자회사를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김영배 의원님 안에서는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및 수협은 조합원의 연대를 기반한 협동조직이나 농협 경제·금융지주회사와 수협중앙회 출자회사,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사실상 일반 기업원리로 운영되거나 은행업법이 적용되고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도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 역시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적용 제외할 필요가 있고 수협은행의 업무 전체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수정안에 의견이 반영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사항, 21쪽입니다.

업연초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인데요.

김영배 의원님 안에 이 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업연초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조조직의 성격이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

업에 포함하는 것이 성질상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예비 사회적기업 부분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세 제정안들이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동그라미 6번, 우수문화 사업자와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님 안에만 포함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수문화 사업자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로서 다양한 주체의 연대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여서 수정안에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22쪽, 동그라미 7번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할 건가의 문제인데요.

이 안도 김영배 의원님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되겠고.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으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연계고용 등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해서 여기에서 배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 수정안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인데요.

사회연대경제 지원조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사이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는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정의 조항은 필요하고, 다만 조직 성격을 고려해서 자구를 정리해서 수정 반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23쪽의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입니다.

이것도 정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정의 조항에 포함해 봤고요.

다음 동그라미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인데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이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지금 안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구요.

다음, 사회연대금융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님 안에서 사회연대금융의 범위에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한 금융지원 외에 단순 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자금 선순환의 구조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수정안에 그리 반영했구요.

그다음, 지역기금 및 민간기금을 제정안들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 개별 조문에서 지역기금과 민간기금 설치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기금과 민간기금 설치 규정은 개별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별 조항에서는 빼버리고, 중개기관 등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개별 문구들이 있어서 이 정의 규정에서만 지역

기금과 민간기금을 뒤서 각 조항들이 유기적 연계성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4쪽부터 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기본원칙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관련 부분인데요.

제정안들에서 기본원칙하고 책무를 두 개 조항으로 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으로는 박스 보시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우선,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민주적·개방적 투명하게 운영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최소한의 이익금 보유 및 이익을 해당 조직에 재투자 의무,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 의무, 조직 간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렇게 돼 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는 그 박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기본원칙은 2022년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연대경제 공식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구요. 기본원칙 규정은 법률 전반에 걸쳐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제목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위치 자체를 정의 규정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안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책무는 사실상 기본원칙과 약간의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책무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여서 수정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기본원칙의 개별 워딩 규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우선’ 이러한 워딩과 관련해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윤 창출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이 우려돼서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이 표현을 문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이익금 보유 및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에 재투자’ 및 ‘이익의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워딩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반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규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우선출자규정과 충돌될 소지가 있어서 ‘재투자 의무’는 삭제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으로 수정 반영해 왔습시다.

37쪽부터 수정안은 보고드린 수정의견이 반영돼 있는 구체적인 워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0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조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들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국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기본법에서 필요한 조항들인데 규정 방식이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를 각각 구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통상적인 입법례상으로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런 입법례의 성격에 맞추어서 조금 수정 반영해 왔

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 부분은 김영배 의원님 안에만 있는 사항인데요. 국민의 권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결사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고 또 기회균등은 평등권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그렇게 크게 규정할 실익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았고요. 국민의 의무 또한 이걸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식, 생산, 소비 측면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자칫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조금 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것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잠깐만. 수석전문위원, 이거 끝까지 다 이렇게 듣고 우리 토론합니까? 아니면……

○소위원장 윤건영 중간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책무……

○소위원장 윤건영 앞단의 정의와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만.

○고동진 위원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윤건영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책무까지 하시지요. 그다음에 이제……

○고동진 위원 몇 페이지까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면 46쪽, 수정의견을 반영한 조문대비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46쪽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체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뒤에는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고 다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전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기재위 쪽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시 주관해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보류되어 왔다가 새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지금 한 5개, 6개 부처의 각각의 법을 갖고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정부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연대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청회 같은 것까지는 했다가 오늘 법안심사를 하게 된 건데요, 소위에 서요.

이게 제정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성곤 의원님, 김성희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3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문위원실과 아주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안에 다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정의에 관한 부분이라, 앞서 수석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정돈이 되면 뒷부분은 속도가 날 수 있어서 좀 길게 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게 자세한 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안에서도 보면 쪽 거론이 되는 것 중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노동부 소관이고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복지부, 소셜벤처 이런 건 중소……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부 이런 거는 좀 포함하는 게 좋겠다 이 의견도 이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게 행안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 모든 부처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동진 위원** 기재부도 다 협의가 됐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용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복지부 또 마을기업은 행안부인데요, 다 협의가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내용에 빠져 있고요.

○**고동진 위원** 그 안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연대경제기본이라고 하는 게 개별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개별법으로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커버하고 그것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법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여기 기본법에서 담지는 않았고요. 기본법은 처음에 제정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는 중복되거나 또 어디는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 간의 역할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제일 큼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한 15년 정도 이끌어 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정부의 특성에 따라서 많고 줄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이, 기본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방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시도나 지방에 자율권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하자 그러면 시도나 시군구 단위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 같은 거를, 이 안에 있습니다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학적 개념도 사회연대경제가 비주류라고 할 수 없이 주류 분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자율적으로 운영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차관이 설명한 바는 이 사회연대 개념 이전에 각 분야별로 부처별로 다 지원을 하고, 분야별로 이렇게 다 지원을 했는데 이걸 상위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만들고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각 법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각 개별법이 커버하는 부분은 제정법에는 빠져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다면 기존에는 개별법이 있으니까 각 부처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이끌어 나갔는데 이 기본법을 통해서 지방정부, 지역 중심으로 가는 게 가장 큼니다. 그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전환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고동진 위원** 거버넌스 체계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방정부를 좀 독려하고, 경기도라든지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군 단위로는 잘되는 데가 있는데 광역정부 단위로 보면 단체장이 관심이 좀 적거나 이러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알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45쪽에 법률안을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연대경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조항들은 개별법에 가서 하도록 해 놔고요.

그다음에, 다만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총괄 부서로서 각 개별 부처에서 집행하는 것과 유기적 연계를 하도록 해 놔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다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행안부가 다 확보해서 이렇게 나눠 주거나 그런 자율성을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와 합의가 나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합의가 됐다라는 거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는 이번에 조직이 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하기가 좀 수월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끝났으면 다음 의견 주실……

이달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아까 사회연대경제 잘하는 광역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지사 할 때 경북이 연속 3년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고 가장 먼저 태생한 곳이 문경, 일제시대 때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아까 수석께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윤 창출의 가치를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를 삭제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동안 하던 여러 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전부 우리가 여기 다 끌어모으는 게 이윤 추구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계속 보태 줘서 그 기업을 인공호흡기 달아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이러려면 아까 고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 두고……

우리가 마을기업도 작년에 겨우 법을 해서, 앞에 가서 통계에 보면 마을기업이 행안부가 해 본 게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는 돈 버는 조직도 아닌데 이윤 창출이 담보가 되어야지 지속가능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전국에 세포처럼 자라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행안부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머리 따로…… 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밑에서 일을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장사꾼한테 장사를 맡겨야 제대로 이 조직이 잘 가는데, 물론 거버넌스가 이렇다 하고 이래도 이게 바로 일반미를 정부미로 만드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재부를 설득해 가지고, 그 법도 나온 것 보면 우리는 3개밖에 안 나오고 의원들이 기재부에 다 법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정말 잘할 수 있고 작은 마을 단위에 이런 조직이……

왜냐하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경제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기재부와 의 관계, 산업부와 의 관계, 이게 다 있고 행안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발 조직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행안부가 해야 될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부처 간에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 1분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주식회사로 운영되어진 경제 체제였습니다.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연대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회연대경제에 있는 경제 주체들 또한 이윤을 발생시켜야 되고 그 발생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이윤으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위에서 논의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이 법이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 공히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달희 위원님은 이 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당부를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해 가면서 좀 더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또 점검할 게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기본계획하고 부문별 시행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바·사 사항입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조항들인데요.

세 의원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위성곤 의원님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행안부로 해 났고요. 김성희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성격상 자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집행 기능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위성곤 의원님 안처럼 수립 주체를 행안부장관으로 하고 자문위원회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형태로 조문을 다 정리·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립 주기와 관련해서는 5년, 4년 안으로 각각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통상례에 따라서 5년으로 수정·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을 보면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의원님별로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13개 있는 안도 있고 김영배 의원님 안처럼 17개 사항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정안들의 공통된 부분과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서 8개 사항으로 해서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도 연계되지만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행안부장관이 수립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또 시도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만들어서 그쪽에 송부하는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요. 시도는 기본계획 대신 다른 관계부처처럼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만드는 체제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변경 시에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넣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50쪽부터 조문대비표 보시면 개별 조문에 포함되어 있고요.

56쪽에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기본계획과 계속 연계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면 이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가 시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났고,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시도가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시행계획도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삭제·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이것도 의원님별로 체제를 조금 다르게 잡으셨는데, 위성곤 의원님 안은 행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추진실적 평가하는 것을 행안부장관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은 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도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평가 같은 집행업무를 맡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위성곤 의원님 안처럼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면서 필요한 조항들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문단이나 전문평가기관을 두고

있는 개별 조항들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에 반영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59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부분인데요.

이것도 계획과 집행, 실적 평가 등과 관련해서 그 기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인데 실태조사 이 부분도 작성 주체가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관 부처가 누구인지를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정했고.

기타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영배 의원님 안의 협의조정이나 지역별 시책 추진 이런 사항들은 이미 지역별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되고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시도에 송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 조정이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항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정부는 다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기본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려하셨던 각 부처별로 하던 것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도 잘하는데 조금 관심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A지방정부에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다 있으면 이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하고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고 분절적으로만 각 부처에서 별도로 의견수렴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의 연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지역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하지 않고 시행계획만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기본법이기는 한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안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만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계획만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행안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으면 그에 따른 시행계획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우려는 알겠어요. 예를 들면 광역별로 어떤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거의 하지도 않을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광역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

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것만 일방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는 위원님이 시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 얼마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부터 부담이 되겠다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중립적인 안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기본계획도 시도 단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전에 사회연대경제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적경제 이렇게 부르면서 할 때도 기초 단위에서도 기본계획들을 작성을 하고 이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달희 위원** 맞아요.

○**이해식 위원** 그동안 사회연대경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좀 활성화되는 듯하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말하자면 예산 지원도 거의 하지도 않고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거의 형해화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시동을 걸고 다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님, 보완 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 시도별 기본계획이 없는데요. 시도별 기본계획은 없지만 행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포함하고 규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도별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거쳐서 중앙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절차적 프로세스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저도 충분히,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중앙의 기본계획이 있고 또 광역시도별 기본계획이 있고 그게 더 바람직한 거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리 사회연대경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미약한 상황이라는 한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랄까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기본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모경종 위원**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행안부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역력이 행안부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가르마를 타야 될 부분들,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 같은 것도 비슷한데요. 청년정책도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 또는 여러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이것들이 시행계획으로 이어질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행정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 역시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까지 듣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마을기업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고용노동부도 보면 고용부장관이…… 그래서 이 개별법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연대하는 이걸 할 때는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감 있게 이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도 거기서 세우고 위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지원하는 포인트가 될지……

개별법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각자 다른, 시기적으로 5년씩 계획을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지금 이 법 하면서 계속 생각이 작은 그릇에 이 큰 것들을 갖다 구겨 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방의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도 단위는 기초단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서 각자 다 5년마다 세워서 오히려 그 계획을 잘한 데를 상을 주고 이런 게 더 나올 것 같아요.

위에서 정해 갖고 내려보내는 것은 고용노동부 같은 것은 그게 가능해요, 전체 자기들의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사회적경제 추구하는 게 따로 있고 자활기업도 추구하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다 모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식 위원님처럼 기초단체든 광역단체한테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고 지원만 행안부가 해야 된다.

○소위원장 윤건영 대체적인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광역단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차관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74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인데요.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위원 구성, 지원 조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 설치 조항들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했구요.

그리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장관과 민간 위원장 1인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 구성에 관계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행안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에 행안부장관이 부총리인 재정경제부장관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서 민간 위원장 1인을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서 행안부장관은 간사 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30명 안이 있고 40명 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참석 대

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약 15개고 또 민간 위원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가 한 40명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대표자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서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반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76쪽입니다.

위성곤 의원님과 김성희 의원님 안에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국회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을 위원 구성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 추천을 넣는 경우에 기존 입법례들을 보면 익숙한 위원회입니다만 저희 위원회와 4·3이나 10·29이태원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특별검사후보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추천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 구성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그리하고 있어서 지금 이 위원회가 그 정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이 조항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무기구는 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위원회가 공공기관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문위원회로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조항을 정리했고, 또 김영배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정책국을 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사회연대경제과를 두라는 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직제 편성과 관련되는 거라 저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조문을 정리해서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수정안은 77쪽부터 87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부분이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단위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지역 단위에서 시도별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것도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봤습니다.

다만 이게 시도별로만 할 거냐 시군구별로도 할 거냐인데 위성곤 의원님과 김성희 의원님은 시도별만 하고 있고, 이것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부분에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시도 단위로만 계속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과 김성희 의원님 안은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도 시도 단위로만 설계를 해 놓으셨고, 김영배 의원님 안은 시군구까지도 설치하는 걸로 해 봤는데 앞쪽 부분에서 계속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들을 시도 단위로 하는 걸로 하고 시도가 사회연대경제의 중추 단위로 기본법상에서 그렇게 설정하신다면 여기서도 시도 단위의 경제발전위원회로 두고 유사·중복위원회 설치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춰서 유사위원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원 설치인데요. 이 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결정적으로 기능 중복이 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기능 중복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사회연대경제원 설치하는 것은 빼고 다만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기

본계획을 만들고 실태조사나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 기관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 및 정책 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태조사 등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게끔 하면서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서 정책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그렇게 수정안에 반영해 났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에도 두되 유사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운영하는 그런 안에 동의를 하고요.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은 김영배 의원님 안하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서 부처 협의 다 했냐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고용부에서는 이것을 하면 본인들이 지금 사회적기업 관리하는 기관과 중복된다고 해서 사실 신중검토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도 연구 기능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해서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제정안에 담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 위성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이 제정안에 들어간 것은 마무리 다 된 겁니다. 그것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고용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놔두고 우리가 별도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설치하지 않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연구 그다음에 전국적인 현황 파악 이런 통계 같은 게 있어야 의원님들이 평가하고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센터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고동진 위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각 부처별로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하게 하고, 각 부서별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행안부 전체로 묶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에서 기재부보다는 행정안전부가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가장 큰 이유가 기재부라든지 경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느냐,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제적 지표만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중을 더 위에 놓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행안부는 마을기업도 그렇지만 공동체 복원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동진 위원 별로 납득은 되지 않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동진 위원 왜냐하면 뒤통수까지 이렇게 죽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조직 만들

어 가지고 결국은 국가 재원을 지원해서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이런……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납득이 안 돼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기존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하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지, 새 정부 출범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갖다 놓고 이것저것 전부 다 하고 이런 것까지 몰아 가지고 한다, 이게 나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 부분 지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오전 중에는 가급적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일독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고동진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적 연대를 하는 게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모아서 하나의 규모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시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로 돼 있는데 요. 저는 시군구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와 시도의 경우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시군구까지 시행계획을 하는 것은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자율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무화시켜 놓지는 않았습시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까지는 지금 현재는 자율로 하게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도까지는 해 놓긴 했는데 유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반영돼 있고.

○위성곤 위원 제 의견은,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군구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도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위성곤 위원 논의해 주시면 수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중요하기보다는 잘해 나가서 부작용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고동진 위원님처럼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갑자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다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가고 저희는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끈끈하게, 지금 5~6개 부처별로 나뉘져 있는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거버넌스라든지 생태계가 구축되게끔 하려는 거고.

행안부의 기본계획은 사회연대경제의 목표라든지 전국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중

장기 발전방향 그리고 제도개선 내용 이런 큰 틀에서 들어가지, 구체적으로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을 반영할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8개 항목을 보셔도 이 정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성곤 위원** 차관님, 제가 얘기한 것은 자율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논에 따른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 입장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시도 단위 먼저 의무화해 놓고 시군구는 조금 자율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법률안에 저는 시도 단위는 의무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에서는 아까 얘기한 시행계획 수립과 발전연구회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제가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방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다 모아서 하겠는데 지금 이미 —행안부는 잘 모르고—지방정부는 이 부처, 이 부처, 이 부처, 5~6개가 있으니까, 경제 통상국이나 산하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서 행안부가 하는 마을기업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회적기업도 지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 있고 물론 못 하고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가 잘 못 하니까 행안부가 가지고 와서 가르쳐 가지고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지방정부가 행안부를 가르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 타이밍 같아요. 차관님 대답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둘째는 재정,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이 일견 일리도…… 큰 기업 하시고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100%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투자 대비 이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아주 미비는 합니다. 그런데 고을고을마다 인구소멸지역에 한 두 명 있는 청년이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의 살림이나 살아온 노하우를 산업화하거나 해서 5명 내지 10명씩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안착하고 와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그 지역으로 보면 정말 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모를 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서 참 답답한 게 행안부가 현장 파악을 좀 더 하고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를 지정해서 서베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센터를 해서 연구인력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산하기관 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를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모델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해 주시고 고동진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오늘은 이달희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 같습

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거고, ILO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또 기본법이나 통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이여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동진 위원 일부 국가가 했는데 별 볼 일은 없었어요.

○이해식 위원 아니, 일부 국가가 아니라 유엔에서 권장하는 거니까요.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 90페이지에 위성곤 의원님하고 김성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안을 보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역 단위에서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김영배 의원안을 보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만 ‘둔다’ 이렇게 해 놓고 하단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군구청장도 결국은,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가되 다만 조항을 2항이나 3항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조항을 따로 두든지 해서 시군구청장의 경우에도 지역발전위원회를 조례로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게 어떨까. ‘시군구청장까지 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도지사, 광역은 ‘둔다’로 하고 기초는 ‘둘 수 있다’ 이것을 조문에 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정안 3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중앙에 의견을 제출하는 조항은 아니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중앙에는 4대 협의체가 추천한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말씀 듣고 이 안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해식 위원님 코멘트 감사드리고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특히 불란서라든가 좌파 정부가 강한 그런 국가들에서 시행을 해왔고,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입증된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관한테 한번 여쭙볼게요.

이거를 사전에 여러 부처하고 많이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뤄냈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만약에 이 법이 제정돼서 실행이 된다면 예상되는 효과가 뭐예요? 이거

는 분명히 좋아진다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얘기를 하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황이나 통계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비교라든지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회 위원님이 누차 강조하셨지만 지역에서 잘되는 분야가 있고요, 사실 좀 관심을 안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잘되는 분야는 있는데 자활기업이라든지 소셜벤처기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서로 그런 잘되는 분야를 공유해서 다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공통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되는 그런 효과,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예방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회연대금융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자금이 필요한 데도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담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호부조,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네에 있는 이런 쪽을 소규모 자금이지만 잘 지원해 주는, 해서 성장 지원……

○**고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1, 2, 3, 4,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각 부처나 각 지자체에서 일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메꿔 주겠습니까라고 하는 데 효과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거를 푸시한다고 그러긴 그렇고 그걸 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각 부처도 각 부처에서 잘 못 하던 거를 보완하고 이끌어 주고 가이드 해 주고, 행안부에서 지방조직을 운용을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각 부처가 못 했는데 행안부가 집중해서 하면 잘할 거다, 이게 내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법안 자체를 뒷다리 잡는 게 아니라.

차관 말씀은, 지자체 또는 각 부처에서 이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거가 미흡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행안부가 전부 해 가지고 와서 우리는 행정 전문가들이니까 이러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4번 얘기를 해 보라. 통계,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미흡한 소외된 그런 분야 또 서포트 해 주고, 금융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한 부서가, 한 부처가 했던 것보다는 행안부가 하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재정부가 아니라서 약간 뭐 신뢰는 안 가는데.

제가 이렇게 뒷다리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아마 저나 다른 반대하는 위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안소위는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른 부처가 해서 못 하는 것은 그 부처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이걸 행안부가 다 끌고 와 가지고, 가뜩이나 비대해지는데.

○**위성곤 위원** 위원님, 제가……

○고동진 위원 제 얘기를 한번 마무리할게요.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잠시만요.

○고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대해도 다수결 해 가지고 통과시키겠지요.

○위성곤 위원 이 법이……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정리할게요.

위성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을 지금 자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공히 시군구청장에게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행안부차관께서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하시고 법 전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 단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지역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관련 규정인데요. 이거는 아까 중앙에 뒀던 그 센터의 지역 단위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필요성은 공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업무 부분이 제정안에서 너무 규정돼 있는 바가 없어서 법률에서 대략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에 그렇게 반영해 났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제정안에서 직접운영, 공동운영, 민간위탁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법적 용어 형태로 수정의견에 반영해 났고요.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과 관련해서는 이게 별도 법률 근거 없이도 조직될 수 있는 거여서, 법률에 꼭 넣을 실익은 없는 부분이어서 수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회연대금융 부분 아울러서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부처 합의들이 다 됐나라는 질의들이 있는 부분과 좀 많이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개별 부처, 특히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의견이 들어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정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 정비 사항으로 ‘금융상품 개발’이라고 돼 있는 워딩에 금융상품 개발의 전문성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개발 지원’으로 수정의견이 반영돼 있고요. 여신·출자 확대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들은 다 삭제해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제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공제사업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착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경제 관련 부처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

서 수정안에는 삭제되어서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배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정부 법률 제정권 이 규정은 국회 입법권과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어서 저희가 수정안에서는 삭제해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련 연계된 조항들이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사회연대금융기관인데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투자자 사이에서 금융을 중개하고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가 돼 있고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기능하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 108쪽입니다.

이게 김영배 의원님 안에만 민간 사회연대금융기관 지정·육성 의무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라고 조항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 관련 전문성이나 또 현재 새마을금고나 신협,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조항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결로 수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112쪽, 기금까지 마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민간기금, 지역기금,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제정안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 기금들의 설치 요건들이 근거 법률에서 다 규정돼 있는데 그런 설치 요건들이 다 좀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고,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는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수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간기금하고 지역기금, 지역기금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여 안 하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둘 필요가 좀 적은 성격이 있고. 민간기금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 법률에서 꼭 하도록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들은 다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수정,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113쪽 마지막, ‘참고로’ 부분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행안부가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에 사업출연하는 형태로 이 기관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에 출연사업을 줘서, 출연금을 줘서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기획예산처 의견이 있어서 그 형태로 수정안에 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국가 출연금 운용에 있어서 기관운영비나 사업비하고 구별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출연금 이용의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성 차원에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아울러서 추가해서 보완해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행안부가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에 사업 출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번 법에 담기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당초 의원님들 안에는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자율적으로 통제 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안이 담겼는데, 아무래도 기금에다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재정 당국에서 좀 어려움을,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협의 과정에서 출연금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요. 그러면 어디다가 출연할 거냐 해서 행안부가 정하는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115쪽에 보시면 출연금하고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가 수정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타 부처와 조율하다 보니까 미완이다라는 지적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이걸 오늘 법안 처리와는 상관없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되었고, 동법을 만들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추가적으로 담아 가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0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와 관련된 조항들인데요.

제정안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특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구매 의무화를 시켜서 각 기관, 공공기관들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공청회 진술에서 나왔다고 너무 여기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더라는 의견도 동시에 게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할 때 그 안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도 총 구매 목표량에 포함해서 하는 형식으로 규정을 담았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권고 조치를 요구할 때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조금 권한상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협의 조항을 삭제했구요. 기타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123쪽인데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 조항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위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로 바뀌어서 수정안에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9쪽, 시설비 등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조세 감면이나 기부·출연 시 우대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심사 이력이 있어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관련 근거법인 조세특례법이 안 되면 여기에서 담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국공유재산 특례 부분은 그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물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정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 사회연대경제의 날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전문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경제교육,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 촉진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전문인력 교육·훈련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님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법률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어서 국가·지자체에 전문인력 육성의무를 주는 규정으로 포괄하는 형식으로 수정·반영해 났고요.

134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제정안들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시책에 관련 시책을 포함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경영·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도 수정안에 반영해 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상 지원’ 표현 부분들은, 저희가 이것도 개별·구체적인 조항에 없으면 안 되는 얘기라 그런 부분은 워딩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협력·연대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 특히 김영배 의원님 안에서 이종 협동조합 간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김영배 의원님 안은 특별히 구체성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차원으로 수정안을 정리해 났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내용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에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조세의 특례·감면은 작년을 기억해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검토할 때도 감면 의견을 주셨을 때 이 사회연대기본법이 제정 중에 있으니까 제정되면 반영하는 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정이 되면 올해 조특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제 나머지 143쪽부터 보칙·부칙까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국제 교류·협력 촉진 관련한 조항인데요.

이 규정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만 김영배 의원님 안에서 되게 구체성을 가지고 ODA하고 연계하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협력사업을 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그것을 다 포괄하는 취지로 저희가 수정의견에 담았고요.

다음, 147쪽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공개 및 통합공시 부분인데요.

제정안에서 조직 운영공개, 경영공시, 통합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공시 하면서 굳이 운영공개를 둘 필요는 없어 보여서 수정안에 운영공개 부분은 빼고요.

경영공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각 개별법에서, 사회적경제연대기업이 들어오는 개별법에서 공시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해 버리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와 연착륙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경영공시 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부 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큰 문제가 없도록 서로 조율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또 준비기간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시행일을 3년 뒤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관련 정부 부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55쪽 보칙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행정기관의 보고 의무와 권한 위임·위탁 규정인데요.

이게 김영배 의원님 안에 주로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 수립·심의 국회 보고, 중앙부처 등 시행계획 소관 상임위 보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아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조항에서 국회 제출·보고 의무를 두고 있어서 그 규정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너무 국회와 관련된 개별·구체적인 거라 그렇게 갈음하도록 수정 반영했고, 권한 위임·위탁은 권한은 위임이고 민간위탁 부분은 업무인 점을 분명히 명시해서 수정안에 반영해 났고요.

다음, 158쪽 벌칙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회연대경제원 설치를 전제로 한 직무상 비밀이나 유사명칭 사용 관련 조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벌칙과 과태료 조항은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160쪽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과 관계된 사항인데요. 의원님별로 3개월 또는 6개월인데 준비기간 감안해서 6개월로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시의무 규정은 3년간 유예를 두는 형태로 하고요.

준비행위도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원 설립 때문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행위와 관련된 부칙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수정안에 동의는 하는데 국제 협력과 관련되어서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제출한 법안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지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국제 협력사업에 실질적인 필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제 생각은 필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에 되어 있는데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촉진뿐만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좀 부각시키려는 측면이 있었고요.

145쪽에 사실 그 조항, 제25조제1항을 보시면 수정안이나 다 있는데 국제 협력에 있어서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등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능하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 준 거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건데 그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재원은 주지 않겠다 이게 정부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고 연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이 잠깐만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동의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게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굉장히 구체성이 없고 특히 여기에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래서 정부 쪽에서 합의된 방향은 어차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할 때 과거에는 이런 형식의 법률 규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정부가 예산을 갖고 그것을 개별 사업 공모를 해서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사업 베이스로 예산을 따 가는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법률 형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기획예산처도 그 형태로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전체가 수정한 방향은 1항을 통해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사업을 편성하면 거기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2항에서 하고 있으니, 그 편성된 예산을 결국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해서 하게 되니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마련된 안입니다.

○위성곤 위원 명시적으로 필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가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로 어떻게 쓰는 문제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정리하면 될

문제인데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 사실은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정부에서 협의한 안이라 추후 논의 과제로 좀 넘겨 주시면 어떨까……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전에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계속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본 거니까요.

혹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없으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동진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동진 위원님 반대, 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표결 안 해도 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고동진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곧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할 안건이 총 12건이 대상이고요.

3쪽의 심사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에서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건인데요. 김한규 의원님께서 내신 건데 강원하고 전북 할 때 한번 하신 사항인데요.

지원위원회가 지금 상한이 35명 이내고 실무위원회가 상한이 30명 이내인데 정부 개편으로 인해서 당연히 정부 대상도 늘고 심사 대상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위원 스폿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실무 쪽에서 이거를 각각 5명씩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실무적 필요가 제

기때서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거고 전북하고 강원에서도 각각 5명씩 상향 조정하는 걸로 정리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5명씩 증원하는 걸로 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8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기구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삭제하는 위성곤 의원님 안인데요.

지금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 지원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원단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만 애초에 시작할 때 사무기구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두었더랬어요. 그래서 법을 한번 개정해 가지고 1차에 한해서 유효기간은 한 번 연장을 했는데 그 유효기간도 끝난 상태로 지원단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다른 특별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의 유효기간 자체가 법률에 없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고, 없는 상태로 지원단은 또 유지되고 하니까, 지원단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모양새가 되니까 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배경하에서 내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유효기간 삭제로 법안을 내셨는데 사실상 유효기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본 조항에 있는 그 조항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취지대로 하려고 하시면 현 18조의2에 있는 사무기구, 그러니까 옛날 지원단 근거지요. 이제 이거는 삭제하고 새롭게 지원단 설치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에 몰아서 같이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도조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지정하는 건이고 위성곤 의원님이 안을 내시고 또 소개하신 청원 건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이렇게 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놔는데 그 시행령에서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를 다 갖고 있다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중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보시면 분리과세대상에서 빠지면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 대상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바꿔 달라는 건데 이거는 행안부로부터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이미 조례 등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그리고 13쪽, 라.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건도 위성곤 의원님이 내신 건인데요.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저희 심사 대상으로 조금 늦게 합류한 건이어서 일단 부처에서 신중검토로 의견제시가 돼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15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건과 관련된 건데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 도입 건인데 해제 절차는 있는데 이 법에서 목적을

다 달성한 이후에도 해지 절차가 없어서 법에 규정한 의무를 계속, 보고의무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실체는 없는데 형식적인 의무는 계속 부과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해지 조항을 만들면서 해제와 같이 위임규정과 관련해서 그거를 맞췄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사증으로 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사증 입도 외국인 대상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도입하기 위해서 위성곤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할 때 IPC가 없어 가지고 항공권도 키오스크 아닌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권 정보 확인하고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할 때도 출도 가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IPC를 도입하게 해 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관계부처인 법무부나 기획처에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수용한다라는 의견이요.

다만 IPC 시스템 도입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예산도 받아야 되고 예산 하기 전에 이게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ISP나 이런 것과 다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재량조항으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기간으로 해서 1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안에 반영해 뒀습니다.

그리고 23쪽, 국제학교 운영사항에 대한 교원 보호, 학교폭력 추가사항인데요. 김용태 의원님께서 내신 건데 제주 영어국제도시 국제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학교의 운영사항에 보시면 24쪽에 관련 법령 제228조입니다.

그래서 3항에 1호부터 5호까지 학년도, 학기·수업일수, 입학자격 이렇게 쪽 있는데 여기다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라는 내용인데, 학교폭력과 교원 보호 이런 측면에서 필요해서 제안하신 건데 교육부 쪽에서는 이게 이미 해당 국제학교들이 국제학교 인증기관 기준에 따라서 이 관련 조치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약간 성질이 지금 현재 228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넣어라 그러면 국제학교 자율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는 건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광고업무 위탁 관련 특례 마련으로 위성곤 의원님께서 내신 안인데요.

지금 현재 정부광고 같은 경우에 문체부에서 총괄하고 문체부에서 언론진흥재단에 맡겨서 수수료 같은 것을, 단가를 총괄 계약하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권은 제주도 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문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가 좋고 수수료 측면에서도 지금 현행 체제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입장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29쪽입니다.

도조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위성곤 의원님 안인데요.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옮겨 놓은 사항을 제주특별법에서 대통령령 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받고 있었는데요. 관광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옮겨 버린 겁니다. 법률로 옮겨 버리니까 자치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걸 못 정하게 돼 버려 가지고 그것을 원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 안입니다.

그래서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업이 시행령에 내려져 있어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도조례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빼 버린 거예요, 도실정을 감안해서.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려 버려서 도조례상으로 못 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원복하는 건데 개정안에서 사실 이 2개만 물면 되는데 ‘제3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전체를 물어 가지고 다른 시설업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문체부는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업만 무는 형태로 하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반영해 놓은 건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특례인데요. 이것 저희 전복법이나 강원법 하실 때 많이 봤던 사항입니다. 어구의 규모 제한, 조업금지구역 지정 등 수산업·수산자원 관련 해수부장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해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또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다음, 36쪽에 생태법인 도입 건입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 내신 건데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생태계·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여 법인격과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인 및 생태법인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생태법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법인의 권리·의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게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해서 특정 생물종·생태계·자연환경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권리를 대변·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지금 저희 현행 민법이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 동물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성을 규정하는 입법 논의 및 법인격 개념 확장을 둘러싼 학계의 찬반이 병존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이유들로 관계부처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다음으로 40쪽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매각·임대·위탁 허용하자는 위성곤 의원님 안인데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시설을 매각·임대 또는 위탁경영케 하려는 조항입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내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신 안인데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매각 부분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임대·위탁경영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의원님실에서는 이게 매각이 안 받아지면 전체

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쪽 부칙(시행일)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 기한 삭제하는 것은 공포한 날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보고 그 조항에 맞게끔 시행일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5쪽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정수 관련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중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8쪽도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11쪽 봐 주시면 도조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지정 관여 해 가지고는 일단 이 부분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도 특례조항이 도조례로도 과세대상 구분 특례를 할 수 있도록 기구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정 실익은 적다 이렇게 해서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삼성혈 역사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이것은 사실 어제 저희가 안을 받아 가지고요. 국가유산청이라든지 기획처에다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행안부는 14쪽 보시면 이게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안부와 관련된 것은 저희는 수용 가능한데요. 유산청이라든지 기획처가 아직 의견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정부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쪽 봐 주시면요. 국제학교 교원 보호라든지 학교폭력 추가인데 이 부분은 국제학교에 관해서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주교육청에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청에서는 현행 국제 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광고업무 위탁 관련해서도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요. 규모의 경제 확보라든지 정부광고 집행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문체부가 보기에는 제주도만 따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메이저 매체 등에 광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봐 주시면 수산업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도 해수부가 신중검토입니다. 근해어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해안가가 전부 다 해당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사님 권한을 넘어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신중검토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36쪽 라. 생태법인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자연계 생물이나 이런 부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행 민법 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이게 함께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신

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하고 41쪽인데요. 41쪽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매각·임대·위탁 허용 인데 임대하고 위탁 이런 부분은 국토부가 수용은 했는데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성곤 의원님은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의견을 드리려다가 신중검토 의견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부처에서 배석을 하셨는데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제주교육청 등의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부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게 사실 삼성혈 재단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사실 문중시설 인데 이 문중시설을 일부 일제시대에 이것을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일제가 강제하는 바람에 등기가 되어져서 법인화되어진 거거든요.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지방세 감면을 받아 왔는데, 분리과세대상으로.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과세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 측에 의하면 도조례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만약에 제주도가 도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재의 요구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쪽 관련해서 삼성혈 재단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탄생 설화가 있는 것이, 제주의 유일한 탄생 설화인데요. 이것이 보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함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교육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광고 업무 관련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주에 정부광고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데 반해서 수수료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 주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 광고 액수가 워낙에 적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얘기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토도시시설의 도시활력지원과에서 나와 계십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헬스케어타운 매각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실제로 정상화가 불가능한데 국토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김미리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입니다.

현행법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었고 사업 시행 기간 중에는 토지를 매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JDC가 지금 상태에서는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위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토부는……

지금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국토부 사업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김미리 예.

○위성곤 위원 이것 어떻게 정상화하실 거예요? 이 법 개정안 말고 다른 방안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김미리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한 사람도 사실 공동시행자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까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계획법에 개정안으로, 대안으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은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매각금액이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 유원지 지정으로 진행하다가, 국토부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유원지시설로 지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건데 국토부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더 따지지는 않겠지만 관련되어서 이 매각을 하지 않는 다라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김미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주교육청에서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23페이지, 국제학교 운영 사항에 관한 건데, 아예 제주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주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신중검토 의견이라고 나오고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이 국제학교의 자율운영 원칙에 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낸 의견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운영의 자율성은 학교 운영에 관한 거지 교권과 학폭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자율성의 개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교 운영이라는 것, 국제학교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여기 24페이지에 법령이 나와 있어요. 국제학교 운영 등에 대해서 1항, 2항, 3항이 나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 보장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교권하고 학폭에 대해서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제학력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미 운영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주교육청에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저희들 학교 설립 승인이라든가 학교 평가 그다음에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평상시 점검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소위원장 윤건영** 얼마 주기로 하시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평상시 저희들이 학교 평가는 2년마다 하고 있고요. 또 매년마다 입학 승인 절차를 할 때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 자료에는 교권하고 학폭이 들어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그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무슨 국제학교의 자율운영 원칙하고 교권하고 학폭이 연관이 됩니까?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국제학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 이상하게 검토의견을 적어 놔 가지고……

하여튼 제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아까 국제학교는 2년이라 그랬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3년에 한 번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학교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는 참고로……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볼 때 그 기준에,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이나 학폭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국제학교는 어쨌든 국제법과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교육 철학과 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이들이 우리나라 학교를……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국제학교가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제……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지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최대한 내일까지 해 주셔야…… 저희가 전체회의 전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2항, 제34항, 제36항 및 제3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과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자료 1쪽, 2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픽시자전거라고 최근에 이게 사고가 나고 해서 언론에 많이 문제 제기된 건인데요. 제동장치를 안 달고 막 다니면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이것을 자전거법에 넣어서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안을 다 내신 겁니다.

안을 내셨는데 의원님별로 지금 정의에 크기·구조만 돼 있으니 장치를 넣자 그리고 또 자전거 안전요건에도 장치를 넣자, 크기도 넣자 그리고 그것을 넣으면서 불법 개조 금지랑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를 넣으려고 하는 거고.

또 크게 김은혜 의원님은, 현재 저희 전기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와 불법 개조 금지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기’를 빼 버리고 자전거를 다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의원님 안이 있으시고, 김은혜 의원님 안은 기존 전기자전거는 놔두고 또다시 자전거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불법 개조 금지나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 규정을 넣고 과태료도 그에 따라서 물고 있는 개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발의하신 취지에 맞게 법률에 규정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것을 규제하려고 저희가 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트랙경기용 자전거라고 그게 대한자전거연맹 규정상의 고정기어 방식인데, 트랙경기장에서는 제어장치 없이 그 규정상 대회에 참가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을 의원님들 개정안처럼 하면 이 자전거가 또 규율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돼 버려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랑 안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의 조항에 있는 제동장치를 하니까 이 트랙경기용 자전거가 빠져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정의 조항에 지금 있는 제동장치는 빼 버리고, 행안부령으로 크기·구조 이렇게 정의 조항을 물고 있는데 이게 또 행안부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행안부령으로 미루어 놓은 현행 규정이어서 이 정의 조항을 재정비하고요.

대신 안전요건으로 장치를 갖고 오고, 현재 구조와 성능만 돼 있는 곳에 장치를 안전요건으로 넣고 앞뒤 바퀴에 각각 작동하는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해서 추가하고 트

랙경기용은 제외되는 사항으로 팔호 처리를 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게 또 안전요건으로 크기를 넣거나 정의 조항에서 크기를 넣어 오신 안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요건이라기보다 자전거도로 통행에 문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 초과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견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의견의 대비표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이것은 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벌칙·과태료인데요.

저희 아까 보고에서 좀 포함됐습니다만 안전요건 부적합 자전거랑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통행·운행 위반이랑 이것을, 저희가 전기자전거만 있다가 이번에 자전거로 바꾸면서 이 과태료도 같이 포함이 필요한 사항인데 일부 의원님은 원래 있는 전기자전거 벌칙과 과태료에서 자전거로만 변경하는 방식이고 김은혜 의원님은 현재 전기자전거는 놔두고 자전거를 하는 방식인데, 그냥 앞처럼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변경하면 두 건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 신정훈·위성곤 의원님 안처럼 그렇게 벌칙과 과태료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안전요건을 포함하자는 건데요.

이게 저희 안전요건하고 불법 개조사항을 법률에다가 새롭게 넣었는데 이것을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도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 이용 환경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 교육 등’으로 돼 있는 조항에 교통안전교육 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자고 해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는 안인데요.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홍보 등’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로 하는 게 맞겠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15쪽,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다 제안을 하셨고요. 김은혜 의원님 안에서만 경과조치를 두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안전요건 준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좀 뒀는데, 이것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안전조치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저희 수정의견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픽시자전거라고 제동장치가 없는 것이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화 돼서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자전거의 정의에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랙경기용 자전거가 배제되는 문제가 생겨서 고민 끝에 정의 규정은 거기다가 두지 않고요.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건을 강화해서 픽시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자전거법에 규제가 되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쪽의 제안 내용과 심사경과는 참고해 주시고요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제5조 사항인데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이 수급계획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도 좀 포함하자는 취지로 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바꾸고, 그 계획의 내용에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필요한 입법조치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적하고 책무 조항에 보면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보다는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해 왔고요.

아울러서 개정안에는 없지만 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심의 사항에서도 이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같이 포함해서 변경되는 계획명을 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수정의견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5쪽입니다.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하려는 양부남 의원안입니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해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서 필요한 입법조치이고 또 행안부가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조항입니다.

다만 여기 개정안에는 조문대비표 6쪽에 보면 이거는 법제적 기술사항, 콤마라고 돼 있으면 이게 or나 또는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냥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같이 물 수 있도록 ‘및’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7쪽,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 점검 포함 사항입니다.

한준호 의원님과 양부남 의원님 개정안인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시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여부와 정상작동 여부, 오인신고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또 한준호 의원님 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을 점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안을 추가하고 있고, 양부남 의원님 안에서는 경

찰관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안인데요. 이게 일단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님은 기존의 시설 점검 규정에 포함해서 추가로 하시는 안을 제안하셨고 양부남 의원님은 별도의 신규 조항을 가지 조로 만들어서 내신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준호 의원님 안처럼 기존에 있는 제12조 ‘시설 점검’을 ‘시설 점검 등’으로 해서 양부남 의원님과 한준호 의원님이 내신 비상벨 안전관리 시설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나 오인신고·운영실태 및 유지 관리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그리 마련했구요.

그다음 한준호 의원님 안에 있는 행안부장관이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시장·구청장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안도 양부남 의원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에 행안부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면, 양부남 의원님 안처럼 경찰관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신하는 형태로 저희가 조문을 정리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부칙 사항인데요. 이걸 개정한 의원님들이 다 6월로 해서 저희 조례나 행안부령 제정하는 시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모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이게 지금 의결정족수가 좀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이견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 다음 안건 하다가 다시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및 45항은 일단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내신 안인데요. 지방공기업 비위행위자의 합격·승진·임용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임용 당시로 소급해서 하려는 안입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박스에 보시면 동일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합격·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임용 당시로 소급효를 하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소급효가 적용되는 사안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수정 반영해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므로 이 법도 처리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2항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셨는데요. 이 개정안들은 저희 법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 조항에서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 영농자재·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등을 이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시는 안입니다. 아마 일부 지역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시려는 취지로 내신 건데요.

농어촌지역 및 읍·면지역 지역민들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을 보면 대상사업장하고 대상지역에 있어서 개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대상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신정훈·문금주 의원안은 가맹점 등록 허용 사업장을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로, 이원택 의원안은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 안에서는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생활협동조합 사업장, 최혁진·복기왕 의원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지역 소상공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비교적 범위가 제한적인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로 확대하는 안 정도가 상충되는 두 가치들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수산업생산자단체에는 농협·수협 등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민간사업장과 경합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있어서 하위법령으로 대상사업장을 위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입니다.

5쪽에서 대상지역과 관련해서도 신정훈 의원안에서는 농촌·어촌 소재 사업장, 이원택 의원안에서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체, 문금주 의원안에서는 농촌·어촌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안호영·송옥주·최혁진·복기왕 의원안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외지역이 확대될수록 영세 소상공인 보호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치가 적정점을 이루는 예외지역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원택 의원안은 농촌·어촌과 더불어 산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상 산촌은 농촌에 포함

되고, 인구감소지역은 일부 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촌·어촌 소재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 수정의견을 제안해 났고요.

또 농어촌 중에는 읍·면 외에 동 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농어촌의 모든 지역에 가맹점 등록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또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하위법령으로 이 지역 또한 포함해서 대상사업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해서 제안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조문대비표상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호에 2호 쪽에 ‘다만’ 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가, 나를 지금 농촌하고 수산업·어촌만 하고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이걸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규모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안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 기억에 작년에도 검토가 한번 됐다가 보류했던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품권 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개정안들은 주민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썼으면 하는 것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고요. 정부 측에서는 상품권 제도 자체가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역 내의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 특히 골목상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다 풀어주게 될 경우에는 또 예기치 못한 읍이나, 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특히 하나로마트 이런 쪽으로 사용처가 쏠리게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검토 의견을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달회 위원님 하십시오.

○이달회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법도 내놓고 이게 이제 상품권이…… 내려갈 때마다 항상 이런 건의사항이 시골지역에서는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가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게 있어요? 그것 보완을 좀 해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사용처를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30억 이하로 규제……

○이달회 위원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거의 13조어치 이렇게 발급할 때, 그때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먼 단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생협이나 이런 부분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은 58.2%가 해당되고요. 먼도 좀 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풀어줄 때도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시군구에다가 협조를, 파악을 해서 원하는 데를 다 풀어 뒀고요. 그중에 현재 읍도 한 30% 정도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자치사무라고 보고, 자치사무인데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행안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다 하는 것이, 지금 조례로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조례도 다 형해화될 수 있고,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기초 단위로, 기초단체에 이 상품권 사용 규제를 30억 이하 이렇게 규제하지 말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어때요? 아예 규제를 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어차피 그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행안부가 돈을 보태 주기는 해도 그 지역의 돈 매칭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그러면 연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30억 제한 규모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행안위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말씀을 듣고 이것 안 넣으면 큰, 대형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로 물리니까 액수를 정하라고 그때 과거에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30억으로 한 겁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역 기초단체별로 무슨 시, 무슨 군으로 말기면 그 시군 단위로 지금 발행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물론 도 단위로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발행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로마트까지 넣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행안부는 그냥 보고만 받으면 어떨까요? 각자 알아서, 발행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데를 알아서 지정하도록, 발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발행받는 사람이 그 구역 안에서, 본인들이 구·군 의회나 거기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게 놓고 여기에 가산되는 지원금만 주면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달희 위원** 대구 북구 같으면 거기에 하나로마트가 있어도 북구청장은 이것을 그렇게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군위군같이 아주 시골인데 솥이 별로 없거나 소상공인이 적거나 또 하나로마트를 꼭 써야 되는 데는 거기도 쓸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 보태 가지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하게 그리고 보고만, 보고만 행안부가 받으면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지침이 된 게 전국적으로 큰 틀에서 통일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0억 이하로 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30억 기준 내에서 그렇게 정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으면 큰 곳으로 물리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가, 그 지역의 작은 곳은 하나로마트 그 자체 액수가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먼 지역은 신청받은 데는 저희가 다 풀어 줬습니다, 현재 먼 지역은. 그리고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저희 쪽으로도 이것을 풀어 주면 안 된다고 건의나 이

런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 같은 경우도 이게 농협이라든지 수협 마트 같은 데 있는 분들은 풀어 달라는 거고요. 그 외에 있는 다른 분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너무 갈등이 많으니까 행안부가 이 지침…… 이게 그 30억이면 큰 규모입니다.

○**이달희 위원** 시골 단위는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면 전부 손 붙잡고 이것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신정훈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서 이것 왜 못 쓰느냐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가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한번 잘 형평을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으로 나온 게 행안부 부령으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자체에 위임할 게 있으면 위임을 과감하게 하고 아니면 행안부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행안부가 직접 하면 되고. 지금 차관께서는 계속 소상공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또 반면에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도움이, 실효적인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달희 위원** 노령 인구들은 더 그렇지.

○**소위원장 윤건영**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절충을 해서 대상과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령으로 하자라고 지금 수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부령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다 받아 안아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령으로 못 할 이유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부령으로 해서 해라 그러면 지금 조례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위원장님이나 이달희 위원님 의견에 맞다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 고민한 안은 여기는 지금 그 안에 보시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액수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행안부가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 수용하겠고요. 다만 가와 나 정도만 저희가 조금, 농촌지역의 범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하고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달희 위원 방금 제안한 내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제안드리면 다음 법안 부산 글로벌허브법을 먼저 논의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실과 행안부가 좀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 오시면 어차피 의결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동 안건은 그대로 두고.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2쪽에 저희 3월 11일 날 한 공청회 진술 요지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부분인데요.

제정안은 규제 혁신 및 특례 부여를 통하여 부산을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기반을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 환경을 조성해서 개발사업의 특례 및 각종 특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법 최초 상정할 때 대체토론에서 이성권 위원님께서 수도권 인구·경제 집중이 가속화되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부산이 물류, 금융,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체토론 말씀이 있으셨고요.

행안부에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돼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부산광역시에서도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자 성공적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법안으로서 적기 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작년에 대통령님이 부산 방문 시에 글로벌허브도시인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제2의 수도 부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균형성장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7쪽에 보시면 발의 이후에, 이 법은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냥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해서 그것에 필요한 특례들을 주는 조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 조정이 다 있었는데요. 그 협의 조정된 내용들이 수정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 결과는, 요약한 것은 박스이고요. 개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본칙 7장·6절, 총 80개 규정, 부칙 1개 사항으로 규

정돼 있고요. 1장 총칙, 2장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3장 1·2·3절에서 글로벌 물류 거점, 글로벌 금융 거점,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구성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요. 4장에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 환경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고.

10쪽입니다.

제5장에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와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6장에서 재정 확보와 관련된 조항 그리고 7장 보칙 및 벌칙, 부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총칙 제1조부터 6조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가 조성하려는 글로벌허브도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규제혁신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칙 사항들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필요한 입법조치들이고요. 다만 대비표상에서 미세한 자구 수정들을 좀 했고요.

14쪽 대비표를 보시면 ‘추진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조정안에 내놓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제4조 1항부터 모든 항에 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 차원에서 정리한 건데 오늘 오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한다’로, 원래 제정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여야 한다’나 ‘한다’나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장’ 이것보다는, 아마 이것 기획처 수정 심의 내용인데 이것은 이전 조정 사항입니다. ‘보장’보다는 ‘지원’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협의 조정 완료돼서 그렇게 내용에 반영돼 있고, 다른 법률 관계는 입법례에 따라서 자구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다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되는 건데요. 제2장, 안 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입니다.

제2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 설치를 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와 실무추진단, 종합계획·시행계획 이게 특별한 규정상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법례에 따라서 5년으로 존속기한을 수정하는 것으로 반영해 났고.

18쪽을 보면 실무추진단의 업무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부산시 실무추진단 업무에서는 빼 달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조정된 부분이라 그렇게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장의 경우에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받고도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서 조치 의무 주체에 부산광역시장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은 5년하고 1년 단위로, 서로 연계된 조항으로 자구 수정 차원에서 조문을 다듬는 수준에서 정리해 왔습니다. 수정의견은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인데요. 제3장, 안 제1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항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건데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특구 지정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그리고 금융 거점 조성을 위해서 금융특구 지정과 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28쪽의 1절 사항을 보시면 물류특구 지정, 국제물류특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준공검사,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 규제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 관세 등 면제 및 환급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개별 조항과 관련해서는 29쪽입니다.

안 16조부터 18조에 있는 국제물류특구의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돼 있는데 국제물류특구 지정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수부장관을 포함하는 게 보다 적절해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유사입법례를 감안해서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서 사항을 포함했구요. 또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고시하도록 규정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도 ‘개발사업’이라고 약칭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이 관련 조항에서는 ‘물류특구 개발사업’으로 약칭을 해서 그 혼동 사항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사 완료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사 완료 공고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 사항도 수정안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정보플랫폼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안 20조 및 21조의 규제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조항과 관련해서 임시허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임시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아울러 보완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 2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국제물류특구 조성과 관련된 위임·위탁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를 포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큰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의견이 반영된 대비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1쪽까지 그 수

정의견이 반영된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52쪽입니다.

2절의 글로벌 금융 거점 조성을 위해서 금융특구 지정 조항, 국제특구 입주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및 자금 지원 등 특례 조항, 금융특구 내 금융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 조항 그리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을 위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조항들과 관련해서도 부처들의 특별한 이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없고, 대비표상으로 보시면 ‘정부’를 ‘국가’로 바꾸거나 미세한 자구 수정들이 좀 있고, 55쪽 대비표를 보시면 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와 다음 쪽 29조 4항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관련해서 이게 지정 취소 부분이 없어서 지정 취소 조항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에 그 사항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제3절(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관련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조항,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지원 조항,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 그리고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사항이고요.

대비표상으로 수정의견 보시면 ‘부산시’를 ‘부산광역시’로 표현하는 것, ‘정부’를 ‘국가’로 표현하는 것 이런 사항, 법체계와 관련된 자구 수정 중심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5쪽도 대비표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률 제명을 구체적으로 바꿔 주려는 조항들이고, 66쪽의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정 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 보완해 놓은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뒤가 별로 없습니다. 마저 하시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 하고 할까요?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68쪽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인데요. 제4장, 안 제37조부터 제53조까지입니다.

먼저 69쪽, 제1절(글로벌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들인데요. 이게 아마 강원이나 전북이나 통합법 할 때 유사한 특례들이 있었던 것이라 익숙하신 점이 좀 있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 다 정리된 수준이고 수정 대비표상으로도 자구 수정 정도의 의견이 제시돼 있고.

다만 4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이게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의 승인이 교육감과 부산시장으로 나뉘는데 초·중·고 부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장의 추천이…… 이게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심사하는 구조가 돼서 추천자를 조금 보완하는 게 필요해서 그 관련 사항을 보완해 났고요.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놔야

해서 위원회 심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문구가 수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 78쪽입니다.

제2절(글로벌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외국인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구 연구기관 및 기업 근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외국방송 재송신, 주택 공급, 외국어서비스 등 외국인 편의 제공인데요. 이런 조항도 저희 특별법, 특별자치도법, 3특별이나 통합법 할 때 논의된 사항들이고 여기에서 관계부처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의견에는 자구 수정 정도의 수정의견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83쪽입니다.

3절(글로벌 문화·관광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자유구역 지정, 관광자원 개발 등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인데 이게 전부 다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역할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거라 이 사항도 관계부처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조항들이고 수정의견에는 법체계, 법제 기술상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안 제5장, 54조부터 71조까지의 사항인데요.

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 특별공급,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조항들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안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 안 54조와 관련해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 실시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물류특구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에 반영해 왔고요. 다른 조항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다음, 89쪽에 있는 안 66조부터 69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나머지들 중에서도 정부조직법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서 그런 조항을 반영·수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영된 수정 대비표가 104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105쪽, 사변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7쪽의 보칙 및 벌칙 사항인데요.

이것도 1장부터 6장의 실체규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청문, 보고·검사 조항들이고 벌칙 조항에서 공무원의제 그리고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한 것인데요. 필요한 조항들인데, 다만 양벌규정에서 인용조문이 76조로 돼 있어서 이걸 78조로 하는 게 법체계상으로

맞아서 그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110쪽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하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도 필요해서 관련 부칙 조항을 포함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본 제정법안은 해양·물류, 국제금융 등 부산의 강점을 활용해서 규제 혁신, 특례 부여를 통해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법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완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대부분이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자구 수정 등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고, 다만 아까 14쪽의 책무에 있어서만큼만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한다’로 그런 의견을 한번 강조 말씀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4쪽 4조에 보면 국가의 책무가 있어서, ‘국가는 부산광역시의’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가 원래 안인데 ‘추진하여야 한다’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모든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제가 얘기 좀……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이성권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 차관님,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5극 3특인데 그것은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중부권 그리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그렇게 5극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3특은 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제주·강원·전북 그렇게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울산·경남은 결국 부울경에 메가시티 전략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 이런 형태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좌절이 됐지요.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시도지사가 바뀌면서 좌절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 균형성장 전략이 5극 3특인데 그 5극 중의 한 극인 부울경 중에 부산만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먼저 가면 부울경 통합 혹은 메가시티 전략이나 이런 게 영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부터 박형준 시장께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전 정부 있을 때부터 부처 간 협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런 노력들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법안 내용 자체도 제가 그냥 한번 쓱 빠른 속도로 훑어봤지만 부처

가 다 동의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부산법으로 따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 또 지금 인천법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인천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례를 주는 것은 또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어쨌든 일종의 각개약진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예상컨대는 인구 100만의 특례시도 특례시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특례시 지원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해식 위원** 특례시 지원법은 총괄적인 법이고 각각의 특례시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말이지요. 부산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겨 있는 그런 특례 정도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전략과 상응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 공청회 시에 저는 참여는 못 했지만……

○**이해식 위원** 공청회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처럼 독자적인 특화 발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나 아니면 행정통합 등을 해서 광역 발전 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선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결정되는 대로, 그러면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당의 전채수 의원도 같이 공동으로 대표발의를 한 법안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의 자치단체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4년 전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다가 좌절이 된 그런 맥락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심의를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차관님한테 묻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개별법 제정하려고 이성권 의원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미루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이성권 위원님께서도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모로 보면 박형준 시장께서 사실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서 만든 법안이고 정부하고 협의나 이런 것도 부산시하고 죽 해 오면서 했던 것이라서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법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어쨌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애당초부터 이 5극 3특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도 다 5극 3특을 전략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거든요, 5극 3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여야 합의, 균형발전·균형성장과 관련된 여야의 이런 합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법을 유독 이렇게 5극 3특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토론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차관님한테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극 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1극 주의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고자 하는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행안위 때마다 얘기를 드렸지만 과거 2008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이명박 정부 때도 5+2라는 형태로 똑같은 균형발전 정책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 속에 저희들도 있다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핵심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5극 3특이라는 국가정책과 상충이 될 거냐가 제일 쟁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통합이라는 형태로 형식적인 통치 방식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산업이라든지 물류·교통·교육 여러 가지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갖추도록 하는 게 결국은 새로운 성장축을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시다시피 이 안에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류고 그다음 두 번째가 금융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류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부산항이라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의 환적항 그리고 일곱 번째 정도의 컨테이너 항의 기능을 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의 신항만과 그리고 공항은 부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과 울산·경남에 있는 모든 산업체들이 그리고 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국제물류특구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의 산업도 지원이 되고 울산의 산업도 진흥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2개의 도시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식 위원님은 오래전부터 정책과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으로 아시다시피 금융 분야를 옮겼어요. 그래서 금융 중심 도시가 서울하고 부산이 된 거고, 부산의 문현동에 국책 금융기관들이 지금 7개 정도가 이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금융이 항상 따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내용에 담겨 있어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극항로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극항로를 하려면 새로운 금융 그리고 또 보험이라든지 이 영역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된 형태의 지원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전 광역단체장들, 민주당 중심의 광역단체장들이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붕괴된 것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게 부산·울산·경남의 경제 동맹의 형태로서 똑같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게 부산하고 경남은 행정 통합을 하자고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광역단체가 더욱더 결속도는 강화되고 있는 중인데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 과정에 이 법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오늘 되게 전재수 의원 장사를 아주 많이 시켰던데—전재수 의원도 이름을 올린 거고, 21대부터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때 최인호 국회의원 그다음에 박재호 국회의원 그다음에 전재수 국회의원, 3명이 다 이름을 올렸던 법안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역발전 전략이나 가치하고 충돌이 되면 그 세 분이 올렸겠습니까? 안 올렸지요. 그런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이 법안은 아까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씀해서 제가 약간 섭섭합니다. ‘이성권 위원님도 계신데’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성권 위원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은 제 개인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제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법안을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을 해서 행안위 위원장님까지도 전달드렸고 지금은 원내대표가 아니지만 그 전의 원내대표단에게도 전달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재수 의원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오늘 할 겁니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법안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표현을 써서 돼요? 정치하십니까? 잘못됐지요, 그런 표현들은.

제가 성격적으로 모진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인데 차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법안은 행안부차관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행정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서 부산시하고 같이 만든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입장이 그렇게 바뀌면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개인을 나무라는 그런 것은 아는데 우리가 적어도 갖춰야 될 자세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크게 이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안될 단계에서부터 이미 부산시하고 행안부가 주축이 되어서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을 다 끝낸 상태에서 성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쪽 수정한 내용들은 자구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데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별로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이나 또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오늘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해서, 부산 시민들이 2년간 기다려 왔던 법안이거든요. 오죽하면 박형준 시장도 삭발까지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헤아려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식 위원** 짧게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해 주시면……

○**이해식 위원** 이성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도 지난번에 이미 법안 내용은 한번 쭉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이전 수석전문위원 제설 때, 지금 전문위원 그 이전 전문위원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제 개인적으로도 법 내용에 대해서 좀 훑어봤고 그런데 법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쭉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지만 역시 이게 3 통합법에서도 부처에서 의견들이 됐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부울경의…… 지금 부산하고 경남은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부울경의 발전전략 이것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백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울경 메가시티 할 때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새로 개선이 되면서 각각 의견이 달랐어요, 부산은 추진 의지가 강했고 경남은 조금 덜 했고 울산은 반대가 심했고. 그런데 그 지형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저는 해소가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산법이 먼저 여러 가지 행정적 특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울산이나 경남은 더 조건이 안 좋아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됐든 아니면 광역연합이 됐든 이런 메가시티 전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방선거 이후에, 광역단체장이 새로 진용을 갖춘 이후에 지역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 법을 운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 짧게 1분만,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해식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이성권 위원님, 짧게.

○**이성권 위원** 예, 그럴게요.

아까 부울경 메가시티 다음에 지금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경남은 이미 2024년에 통합을 천명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양 시도의 도민과 시민들 찬성 여론이 5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 안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출하고 2028년 총선 때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의가 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속도만 다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최초에는 해오름동맹이라고 해서 울산·포항·경주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부산·울산·경남 같이 행정통합 하자고 이미 선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크게 우려될 점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토론은 조금 이따 더 하시더라도요. 우선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62항까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보시면 1쪽 주요내용, 2쪽 심사경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 검토사항입니다.

특례시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으로 2022년 1월 1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 부여와 관련된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부개정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는 일반 시와 동일하며 특례시 자체는 행정상 명칭에 해당하겠습니다.

현재 특례시 명칭 부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고 사무·행정·재정상 특례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례시가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균발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에 인정되는 특례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례 부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제정안은 개별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례시에 대한 각종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례 부여 요청 절차 및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가. 제명 및 목적 규정 사항인데요. 제명이 의원님별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 해서 조금씩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 목적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지방균형발전, 지역 활력 도모, 지역경쟁력 강화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명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목적 규정도 허성무 의원안과 정부안처럼 통합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어서 대체적으로 정부안과 의원님 안 중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선별해서 통합 조정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의 규정, 국가·도·특례시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입니다.

여기서 도도 정의 규정이 돼 있는데 정부안같이 법문에서 괄호를 통해 정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고 인구를 특별히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특별히 심각한 내용의 수정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상으로 통합 조정안에 특례시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도의 책무 규정으로 넘어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해서 통합 조정안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2쪽입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인데요, 이것도 보통 기본법 체계에서 정의·목적 규정 그다음에 국가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다음으로 기본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 조항이고,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라 제정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조항이고 정부안을 기준으로 통합 조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석님, 잠깐만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여기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여기까지 정부안 중심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3쪽입니다.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결과 조치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 많이 보셔서, 강원이나 세종·제주·전북특자도법 할 때 다 있는 내용이어서 그와 유사한 조항입니다.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서는 다른 3특별법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는 건데 행안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고 별도 지원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합 조정안에는 반영치는 않은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여기까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정부 측에서는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면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또 지방분권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서 도나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게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와 중복될 문제가 있고 현재 위원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나 해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제가 산불특위나 무안특위나 여러 군데 갔는데 다 국무총리실 안에 지원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줘서 발전시킬 수 있는 특례를 법률로 정해서 하면 되고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또 지방시대위원회도 있으니까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굳이 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 도시를 위해서 또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행정 실효성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신가요?

○**이광희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면 이 안건까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 잠시 앞서 의논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가지고 다시 특례시 지원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례시 지원법 심사 중이나 이전에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토론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토론 과정에서도 동 법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행안부에서도 수정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도 동의 의견을 주셔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수정의견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될 텐데 지금 배부되는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지적해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정부

와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만든 안입니다.

이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은 하시고요, 저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해식 위원님은 동 법안에 대해서 앞서 토론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제출하셨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서,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특례시 지원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계속해서 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무특례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제정안에서 별표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각 개별법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을 특례시장 권한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그 사항들이 제정안에서는 별표 사항으로 또는 조의 각호 사항으로 꼭 나열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업무인데요. 특례시장에게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이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동일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 규정을 삭제하고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례를 이 제정안을 통해서 다 가져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취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인데 특례시장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양 의결키로, 특례 부여하기로 동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56쪽,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사무와 관련해서 특례시장에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항들인데요. 이것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동일한 특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이 제정안에서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58쪽, 관광진흥법상 특례입니다.

김영진·권칠승·허성무·손명수·이상식 의원안 및 정부안에서 관광지의 지정, 관광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측량, 조성계획의 승인, 관광지 지정의 취소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이게 지방시대위원회 이전의 위원회였던 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 부여에 동의하기로 의결한 사항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김승원·김영진·김종양·이상식 의원안에서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및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관광진흥법에서 특례시장에게 이미 이양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법에서 이양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없는 경우에 이 법에도 불구하고 갖고 오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꼭 이 제정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와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겁니다. 이 조항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조항입니다.

다음 64쪽, 농지법상 업무입니다.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건데요, 군발법에서 동일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거여서 이 제정안에 갖고 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65쪽의 왼쪽 네모 사항입니다.

김성희 의원안은 농지법에 따른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의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려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 미의결 특례여서 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건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업무인데요.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 특례시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항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를 부여하기로 동의한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인데요. 김성희 의원님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의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방시대위 미의결 특례로 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례들인데요.

먼저 김영진·권칠승·허성무·손명수 의원안 및 정부안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 및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구 자치분권위 심의 의결로 특례 부여에 동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3쪽에 김성희·손명수 의원안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고시,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사항 조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부담, 부담금 부과율 조정, 부담금 부과·징수·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성 및 운영·관리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 사항은 지방시대위 미의결 특례로 추가적인 관계부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75쪽 9번 사항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업무에 대한 특례입니다.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등록갱신·변경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대부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실의 공개, 등록수수료의 징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이것도 구 자치분권위에서 특례 부여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78쪽 10번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에서 특례시장에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사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군발법에서 동일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정안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수용 의견은 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중검토 의견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래서 검토서 60쪽에 보면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66쪽·69쪽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의견의 주된 사유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의결을 거치지 못한 특례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해서 부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80페이지입니다.

11번 물환경보전법상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및 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이고 이것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 부여에 동의해서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81쪽에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수립 관련 협의 및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 자치분권위 심의 의결로 특례 부여에 동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 박스 부분인데요.

김성희 의원안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 폐수처리업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방시대위 미의결 특례로 신중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산림보호법상 업무인데요.

첫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고시·관리·해제 및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 부여에 동의하기로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13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업무입니다.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건데요. 구 자치분권위 심의 의결로 특례 부여에 동의가 된 사안입니다.

87쪽, 14번 산지전용허가의 절차·심사 업무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제정안들은 특례시장에게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산지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발법에서 동일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88쪽, 15번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의 지휘감독 및 소방업무 종합계획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특례시장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지휘감독 및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는 창원시장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김성희·김영진·손명수 의원안에서는 전체 특례시장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군발법상에서는 창원시에 대해서만 해당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창원시에 대한 사무특례만 제정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6번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수목원·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정원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이것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특례 부여에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17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업무입니다.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또 손명수 의원안에서는 이에 더해서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또한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구 자치분권위에서 특례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3쪽, 18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입니다.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사용약관 신고의 수리, 시설 사용료의 인가, 터미널 위치의 변경인가 및 승차권 판매 위탁의 예외 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이고 구 자치분권위 심의 의결 특례로 동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94쪽의 김성희 의원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시대위 미의결 특례로 정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82쪽에 있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 폐수처리업자 이 부분은 신중검토고요.

또 방금 설명해 주신 94쪽 마지막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특례 부여 같은 경우는 지방시대위 심의 의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특례가 내려가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쓰던 재정하고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환경 같은 환경에 관련해서 그동안 환경부가 쓰던 재원, 그러니까 그 돈까지 같이 내려가야 실질적인 특례가 되지 그냥 여기 법적으로만 내가 알아서 해라 하면…… 재정도 따라 내려가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행·재정 지원이 함께 가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 동의되거나 특례로 이양되는 부분에 재정이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여기는 크게 없고요.

이건 이렇게 또 봐 주셔야 됩니다. 특례시 특례는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현재 광역정부, 시도, 시나 광역시의 권한이 특례시로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나 광역시에서 하던 권한을 우리 기초시 중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광역 정부하고 특례시 간에 이견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달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95쪽입니다.

19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업무입니다.

의원님 안과 정부안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이것도 구 자치분권위에서 특례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20번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인데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 자치분권위 심의 의결을 통해서 특례 부여에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97쪽의 21번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업무입니다.

제정안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양도,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변경·폐업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신고수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것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2번 주택법상 업무와 관련된 건데요.

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인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명령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시대위 분과위에서 계속심의 사항으로 정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102쪽, 첫 번째 네모 사항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구 자치분권위에서 특례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승인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특례시장이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균발법에 있는 내용으로 제정안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105쪽입니다.

24번 폐기물관리법상의 업무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허가 등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 사항은 지방시대위 미의결 특례로 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107쪽, 네모 사항입니다.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지방시대위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으로 특례 부여에 동의된 건입니다.

다음 네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무를 특례시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지방시대위 미의결 특례로 정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1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서류 확인 및 변경 확인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시대위에서 특례 부여에 동의하기로 심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1쪽은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는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 사안이라서 계속심의 안건이고요.

105쪽하고 108쪽은 아직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11쪽입니다.

25번 항만의 개발·관리,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특례시장에게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균발법에 동일한 특례가 있는 사항으로 제정안에 담아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113쪽, 행정기구 및 정원 책정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례시장이 지자체별 정원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균발법에 동일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제정안에 포함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다음 115쪽, 27번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특례인데요.

특례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조항 역시 현행 군발법에 동일한 특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조치 사항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김성희 의원안에서 특례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30만 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무를 이양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방시대위 전문위에서 불수용 의결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네모 사항입니다.

김종양 의원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지방시대위 미의결 사항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석님, 여기까지 끊어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번에는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113쪽, 26번 보면 검토보고서에는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중검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14쪽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은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법에다가 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정원·기구 규정에 관한 것을 자치법에서 다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7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별표4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법에 옮기지 않고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쪽과 118쪽은 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117쪽은 지방시대위에서 심사는 했는데 불수용을 했고요, 118번은 다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소위원회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특례시 지원법의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마치지 못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

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부처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고동진 모경중 박수민 윤건영 위성곤 이광희 이달희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법무담당관 이명구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